

서울지방법원

1999. 11. 4. 판결선고	인
1999. 11. 4. 원본영수	

판 결

사 건 99가소576995 손해배상(기)

- 원 고
- 이 신 혜
 - 김 선 희
 - 이 경 연

원고들 주소

원고 1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경연, 모 김선희
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훈, 하승수

피 고 대 한 민 국

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정 길

소송수행자 노 병 옥

변 론 종 결 1999. 10. 21.

- 주 문
- 피고는 원고 이신혜에게 금 3,098,884원, 원고 김선희, 이경연에게 각 금 500,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99. 7. 8.부터 1999. 11. 4.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 -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.
 - 소송비용은 5분하여 그 3은 원고들의,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.
 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이신혜에게 금 8,256,120원, 원고 김선희, 이경연에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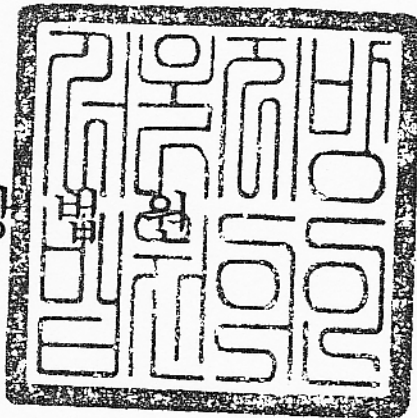
각 금 1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분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
까지 연 2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1999. 11. 4.

판 사 김 중 근 _____

정 본 입 니 다.

서 울 지 방



· 1999. 11. 12

법원주사보운진

